

특별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 제정 : 2014. 11. 6.

제1조(업무 및 지위)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수원과학대학교(이하 “본교”)교직원의 복무, 품위 유지 및 기타 윤리적 행위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제2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홀수로 선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특별조사팀의 명단은 본교 및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조(임기) 위원(위원장 포함)의 임기는 조사 시작에서 종료까지로 한다.

제4조(신분보장) 위원은 위원 본인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5조(임무) 위원회는 총장의 명에 의해 제1조에 규정된 조사를 진행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권한) 1. 위원회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한없이 조사 할 수 있으며,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해당 학과 및 행정부서나 교직원에게 요청하고 제출받을 수 있다. 본교내의 모든 학과 및 행정부서, 교직원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접 해당 학과 및 행정부서, 교직원을 조사 할 권한을 갖는다.

3. 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즉시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4. 위원회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폐기한 경우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제소할 수 있다.

제7조(조사 보고) 위원회는 조사완료 후 즉시 총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보고서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의법조치, 징계조치, 의원면직 등과 같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규정 개정) 위원회는 운영규정을 개정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장에게 개정안을 제출하여 총장의 의결을 거쳐 개정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14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